

(별첨)

### 정관일부변경(안)

개정 전	개정 후(안)
<p>제 6조의 3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②) 1.~2. (생략) 3.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3년이상 최장 10년이내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u>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7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제 6조의 3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②) 1.~2. (생략) 3.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3년이상 최장 10년이내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p>
<p>제 6조의 4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③) 1~4. (현행과 동일) 5. <u>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7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제 6조의 4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③) 1~4. (좌동) 5. (삭제)</p>
<p>제 7조의 2 (주식매수선택권) 1.~7. (생략) 8. <u>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7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제 7조의 2 (주식매수선택권) 1.~7. (좌동) 8. (삭제)</p>
<p>9. (생략)</p> <p>제 7조의 3(신주의 배당기산일) <u>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1조의 2 제1항의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u></p>	<p>9. (좌동)</p> <p>제 7조의 3 (동등배당) <u>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u></p>
<p>제 8조 (명의개서대리인) 1~3. (현행과 동일)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u>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u></p>	<p>제 8조 (명의개서대리인) 1~3. (좌동)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u>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u></p>
<p>제9조 (삭제)</p>	<p>제9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1.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10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2~3. (현행과 동일)</p>	<p>제10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삭제) 2~3. (좌동)</p>

개정 전	개정 후(안)
<p>제11조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1.~5. (생략) 6. <u>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7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41조의 2 제1항의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u></p>	<p>제11조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1.~5. (좌동) 6. <u>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 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u></p>
<p>제12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1.~5. (생략) 6. <u>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7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41조의 2 제1항의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u></p>	<p>제12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1.~5. (좌동) 6. (삭제)</p>
<p>제12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 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u>사채</u>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p>	<p>제12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 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u>사채권</u>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u>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u></p>
<p>제 25조 (이사와 감사의 선임) 1. ~2. (생략) 3.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제 25조 (이사와 감사의 선임) 1. ~2. (좌동) 3.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u>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u>)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u>다만,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u></p>
<p>제41조 (이익배당) 1.~2. (생략) 3. 주주에 대한 배당금은 <u>매 결산기일</u>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지불한다.</p>	<p>제41조 (이익배당) 1.~2. (생략) 3. 주주에 대한 배당금은 <u>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날</u>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지불한다.</p>
<p>4. (생략)</p>	<p>4. (좌동)</p>
<p>제41조의 2 (중간배당) 1.~3. (생략) 4.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p>	<p>제41조의 2 (중간배당) 1.~3. (좌동) 4. (삭제)</p>

## 이 사 후 보 자

(별첨)

성 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김용기	1955.01.07	(주)노루홀딩스 대표이사 (주)노루페인트 대표이사 연세대 경영학과	이사회	없음	(주)노루홀딩스 등기임원	없음	없음	없음
송준서	1965.02.23	(주)노루페인트 연구 소장 (주)노루오토코팅 연구 소장 단국대 공업화학과	이사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최충인	1971.01.13	법무법인(유) 울촌 미국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미국 변호사 (미)조지타운대 법학대학원	이사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